「대학혁신위원회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1.) → 2017. 7. 1. 제정 판 (시행 2017. 7. 1.)

바뀜 5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347/compare?from=1274&to=826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20:20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위원회(이하 위원회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22-03-07〉	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위원회(이하 위원회)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구성) 위원회는 총장(위원장), 기획처장(서기), 부총장, 각 처장, 총장특보, 스미스학부대학장, 재무처장, 단과대학장, 대학원장, 각 대학원장, S/W융합교육원장,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, 대학일자리본부장,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22-03-07〉	**제2조(구성)** 위원회는 총장(의장), 교육혁신단장(서기), 부총장, 각 처장, 대학원장, 각 단과대학장, 재무실장으로 구성한다.
제4조(위원장 및 서기) 위원회의 의장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·수행한다. 〈개정 2022-03-07〉 1.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처장이 된다. 2.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. 3.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	**제4조(의장 및 서기)** 1. 위원회는 의장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. 의장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혁신단장이 된다. 2.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괄한다. 3. 서기는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1. 재정지원사업(중앙정부, 지자체) 운영의 총괄적 점검에 관한 사항 2. 자율혁신계획 상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·환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≣ 공공성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사항 5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현황·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에 관한 사항 6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간 재원 배분의 적절성 및 개선 계획 수립≣ 운영에 관한 사항 〈전면개정 2022-03-07〉	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 1.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. 학과(부)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. R&D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등의 성과와 환류 개선사항 점검 및 대응전략 모색 4. 교육수요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. 교육혁신 및 교육과정 개혁에 관한 사항 6. 기타 대학 교육혁신에 필요한 사항
제6조(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 〈개정 2022-03-07〉 1.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2.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3.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.	**제6조(회의)** 1.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2.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3. 위원장은 가부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.